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(제3판) 개정전후대비표

〈감염관리팀〉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I.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			
3	<p><b>I.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</b></p> <p>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.</p> <p>〈코로나19 감염전파 경로와 주의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코로나19 감염전파경로) 코로나19 전파경로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비말에 노출되어 일어나며 노출의 3가지 유형은 ①미세한 호흡기 비말이나 에어로졸 입자를 직접 흡입하거나, ②호흡기 비말이나 입자가 직접적으로 눈·코·입 등 점막에 닿거나, ③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손(비말에 직접접촉 또는 비말에 오염된 표면을 통한 접촉)으로 점막을 접촉하는 경우이다.</li> <li>▶ (주의사항) 의료기관은 ①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하고, ②코로나19 확진(의심) 환자 관리시에는 표준주의에 접촉·비말 주의를 추가하며, ③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상황*에서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한다.</li> </ul> <p>* 기도 삽관, 기관절개술, 기관지내시경, 심폐소생술 등</p> <p><b>1.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방지 대책 마련·실행</b></p> <p><b>1.1. 의료기관 관리 대책과 실행전략 마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(최소화)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.</li> <li>- 대책 실행률을 위한 조직·인력을 갖추고 역할을 분장하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환자관리 절차를 마련, 행정적 지원 및 인력 자원 동원 등 지원 분야를 확인하여 조정한다.</li> <li>- 입원환자(전입 포함) 관리 절차(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, 병실</li> </ul>	<p><b>I.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</b></p> <p>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.</p> <p>〈코로나19 감염전파 경로와 주의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코로나19 감염전파경로) 코로나19 전파경로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비말에 노출되어 일어나며 노출의 3가지 유형은 ①미세한 호흡기 비말이나 에어로졸 입자를 직접 흡입하거나, ②호흡기 비말이나 입자가 직접적으로 눈·코·입 등 점막에 닿거나, ③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손(비말에 직접접촉 또는 비말에 오염된 표면을 통한 접촉)으로 점막을 접촉하는 경우이다.</li> <li>▶ (주의사항) 의료기관은 ①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하고, ②코로나19 확진(의심) 환자 관리시에는 표준주의에 접촉·비말 주의를 추가하며, ③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상황*에서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한다.</li> </ul> <p>* 기도 삽관, 기관절개술, 기관지내시경, 심폐소생술 등</p> <p><b>1.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방지 대책 마련·실행</b></p> <p><b>1.1. 의료기관 관리 대책과 실행전략 마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—○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(최소화)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.</li> <li>—— 대책 실행률을 위한 조직·인력을 갖추고 역할을 분장하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.</li> <li>—○ 코로나19 환자관리 절차를 마련, 행정적 지원 및 인력 자원 동원 등 지원 분야를 확인하여 조정한다.</li> <li>—— 입원환자(전입 포함) 관리 절차(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, 병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의 일반적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증이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관리 수준이 달라지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로 적용가능,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정</li> <li>- 일반감염관리 중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감염관리 기본 수칙 유지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배치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격리병실, 확진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지정구역 운영</li> <li>-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리 절차와 인력 배정 등</li> </ul> <p>○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·설비 및 물품 등 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한다.</p> <p><b>1.2. 감염예방·관리 교육·홍보, 실천 확인</b></p> <p>○ 기관을 출입하는 사람*은 감염예방·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직원(정규직, 계약직, 협력업체), 실습생, 자원봉사자 등</li> <li>- 출입자와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,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위한 홍보전략을 시행한다.</li> </ul> <p>○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·노출 및 유증상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감염예방 방법(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을 포함한 표준주의 및 코로나19 전파경로별 주의지침)을 교육 한다.</li> <li>-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·탈의에 대한 훈련을 시행한다.</li> </ul> <p>▶ 참조 : '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자료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&gt; 알림.자료 &gt; 홍보 &gt; 교육자료 (슬라이드 및 동영상 강의)</li> <li>○ 코로나19 홈페이지 &gt; 공지사항 &gt; 의료기관 &gt; 교육 동영상</li> <li>○ 직원의 감염 예방수칙(손위생, 개인보호구 착·탈의 등) 이해 현황을 평가하고 환류한다.</li> <li>○ 환자 및 간병인력 등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을 안내한다.</li> </ul> <p><b>1.3. 구조적·행정적 관리</b></p> <p>○ (위험평가와 기술적 개선) 직원과 환자 등이 확진자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와 동선 분리를 마련한다.</p> <p>○ (과밀 방지) 진료/검사 등 대기 구역의 과밀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 환자 수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.</li> <li>-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,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.</li> </ul> <p>○ (방역 수칙) 의료기관 내 각 장소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감염예방 수칙을</p>	<p>배치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격리병실, 확진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지정구역 운영</li> <li>-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리 절차와 인력 배정 등</li> </ul> <p>○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·설비 및 물품 등 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한다.</p> <p><b>1.2. 감염예방·관리 교육·홍보, 실천 확인</b></p> <p>○ 기관을 출입하는 사람*은 감염예방·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직원(정규직, 계약직, 협력업체), 실습생, 자원봉사자 등</li> <li>- 출입자와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,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위한 홍보전략을 시행한다.</li> </ul> <p>○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·노출 및 유증상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감염예방 방법(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을 포함한 표준주의 및 코로나19 전파경로별 주의지침)을 교육 한다.</li> <li>-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·탈의에 대한 훈련을 시행한다.</li> </ul> <p>▶ 참조 : '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자료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&gt; 알림.자료 &gt; 홍보 &gt; 교육자료 (슬라이드 및 동영상 강의)</li> <li>○ 코로나19 홈페이지 &gt; 공지사항 &gt; 의료기관 &gt; 교육 동영상</li> <li>○ 직원의 감염 예방수칙(손위생, 개인보호구 착·탈의 등) 이해 현황을 평가하고 환류한다.</li> <li>○ 환자 및 간병인력 등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을 안내한다.</li> </ul> <p><b>1.3. 구조적·행정적 관리</b></p> <p>○ (위험평가와 기술적 개선) 직원과 환자 등이 확진자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와 동선 분리를 마련한다.</p> <p>○ (과밀 방지) 진료/검사 등 대기 구역의 과밀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 환자 수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.</li> <li>-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,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.</li> </ul> <p>○ (방역 수칙) 의료기관 내 각 장소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감염예방 수칙을</p>	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<b>안내한다.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환기) 장소별 환기 설비와 환기 요건을 확인하고 환기횟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전배기를 통해 공기순환을 높인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</li> <li>-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기,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</li> <li>· 냉난방기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,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</li> <li>-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</li> <li>-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 <p>▶ 참조 : 「호흡기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」, 「슬기로운 환기수칙-공기청정기편」</p>	<p><b>안내한다.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환기) 장소별 환기 설비와 환기 요건을 확인하고 환기횟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전배기를 통해 공기순환을 높인다.</li> <li>—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</li> <li>—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기,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</li> <li>— 냉난방기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,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</li> <li>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</li> <li>—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</li> </ul> <p>▶ 참조 : 「호흡기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」, 「슬기로운 환기수칙-공기청정기편」</p>	
6	<p><b>1.4.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</b></p> <p><b>1.4.1. 손 위생</b> …중략…</p> <p><b>1.4.2. 개인보호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.</li> </ul> <p>…중략…</p> <p><b>참고자료</b> [붙임 1]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</p>	<p><b>1. 일반적 감염관리</b></p> <p><b>1.1. 손 위생</b> …중략…</p> <p><b>1.2. 개인보호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와 접촉하는 인력은 사전에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과 착·탈의 방법에 대한 교육·훈련을 받는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…중략…</p> <p><b>참고자료</b> [붙임 1]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</p> <p><b>1.3. 외래 진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예약제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.</li> <li>○ 진료 예약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.</li> <li>○ 진료 대기 구역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호흡기 예절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.</li> </ul> <p><b>1.4. 공용 공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내 공용 장소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한다.</li> </ul>	<p>-내용 변경에 따른 목차 수정</p> <p>-개인보호구의 교육훈련에 대한 안내 반영</p> <p>-외래진료 및 공용공간에 대한 감염 관리 내용 강조</p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	<p>○ 공용 장소(공용화장실, 공용 샤워실, 배선실 등)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.</p>	
6	<p><b>2. 대상자별 관리</b></p> <p><b>2.1. 일반환자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. …증략…</li> <li>○ 모든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를 적용하며, <u>의심/확진 환자에</u> 대해서는 접촉주의 및 비말주의를 추가하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한다.</li> <li>○ 새로 입원하거나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관련 요인*을 확인한다. * 예시) 증상, 동거인 확진자, 이전 확진력 등</li> </ul> <p><b>【참고자료】</b> [붙임 2] 표준주의(standard precautions)</p> <p>…증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다.</li> <li>•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.</li> <li>○ 재원중인 환자는 코로나19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선별 검사(신속항원검사 포함)를 시행한다.</li> <li>○ 검사, 시술 등을 목적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,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위생 후 이동한다(환자가 가능한 경우).</li> </ul>	<p><b>2. 대상자별 관리</b></p> <p><b>2.1. 일반환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환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. …증략…</li> <li>○ 모든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를 적용하며, <u>코로나19 의심/확진 환자에</u> 대해서는 접촉주의 및 비말주의를 추가하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한다.</li> <li>○ 새로 입원하거나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관련 요인*을 확인한다. * 예시) 증상, 동거인 확진자, 이전 확진력 등</li> </ul> <p><b>【참고자료】</b> [붙임 2] 표준주의(standard precautions) [붙임 3] 비말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. …증략…</li> <li>-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다.</li> <li>•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.</li> <li>○ 재원중인 환자는 코로나19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선별 검사(신속항원검사 포함)를 시행한다.</li> <li>○ 검사, 시술 등을 목적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,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위생 후 이동한다(환자가 가능한 경우). - (선제검사)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*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대상,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**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 *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(기준 선제검사 대상 기간에 한함) **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</li> </ul> <p><b>【참고자료】</b> 코로나비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 &gt; II. 사례 정의 &gt; 1. 사례 정의 코로나비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 &gt; 부록 38</p>	<p>-문구 및 관련 환자 구체화</p> <p>-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불임 자료 추가하여 참고자료 수정</p> <p>-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</p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8	<p><b>2.2. 간병인력 관리(간병인, 상주보호자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기관 업무 시작 전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시행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(증상 및 동거인 확진자 발생 등) 절차, <u>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</u>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간병인력이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의 사용 방법 등 감염예방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 관리한다.</li> <li>○ 간병인력의 식사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한다(보호자식, 구내 식당 등)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사는 모여서 하지 않으며, 식사 중 대화를 금하고, 음식물은 나누어 먹지 않는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...중략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마스크 착용)</b>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식사나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.</li> <li>○ <b>(장갑)</b>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착용한 용무가 끝나는 즉시 벗고 손위생을 한다. 사용한 장갑을 벗지 않고 병실 환경표면을 만져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.</li> </ul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span style="font-size: 1em;">[참고자료]</span> [붙임 1]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&gt;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방역수칙)</b> 담당 환자 외 다른 환자의 침상과 다른 병실에 가지 않는다.</li> </ul>	<p><b>2.2. 간병인력(간병인, 상주보호자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기관 업무 시작 전에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시행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간병인력이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의 사용 방법 등 감염예방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 관리한다.</li> <li>○ 간병인력의 식사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한다(보호자식, 구내 식당 등)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사는 모여서 하지 않으며, 식사 중 대화를 금하고, 음식물은 나누어 먹지 않는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...중략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마스크)</b>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식사나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.</li> <li>○ <b>(장갑)</b>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착용한 용무가 끝나는 즉시 벗고 손위생을 한다. 사용한 장갑을 벗지 않고 병실 환경표면을 만져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.</li> </ul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span style="font-size: 1em;">[참고자료]</span> [붙임 1]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사용 &gt;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방역수칙)</b> 담당 환자 외 다른 환자의 침상과 다른 병실에 가지 않는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부 문구 수정</li> <li>- 코로나19 감염증의 4급 전환에 맞추어 간병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안내 사항 마련</li> </ul>
8	<p><b>2.3. 면회객, 방문객, 자원봉사인력, 실습생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이 없어야 하며, 마스크를 착용하고, 손위생 등 해당 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한다.</li> <li>○ <b>(면회객)</b> 기관별 면회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내하고, 의료기관 방문객은 이를 준수한다.</li> <li>○ <b>(업무상 방문객)</b> 가급적 짧은 시간에 방문을 끝낸다.</li> <li>○ <b>(실습 학생·교육관리자·자원봉사 인력 등)</b> 기관별 실습학생 및 자원봉사 인력 등에 대한 관리규정*을 마련하고,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·대응 절차를 교육한다.</li> </ul> <p>*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행동요령,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등</p>	<p><b>2.3. 면회객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이 없어야 하며, 마스크를 착용하고, 손위생 등 해당 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한다.</li> <li>○ <b>(면회객)</b> 기관별 면회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내*하고, 의료기관 방문객은 이를 준수한다.</li> </ul> <p>*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(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) 입원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원봉사 인력 및 실습생은 내부 직원 관리로 관리 진행</li> <li>- 의료기관별 상이한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하고 면회객 관련 권고안 붙임 자료 작성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참고.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병문안객) ① 병문안 가능 시간, 장소, 허용 인원 확인, ② 감염성질환자, 노약자 등은 병문안 자체, ③ 감염관리 수칙 지키기</li> <li>○ (의료기관) ① 병문안 기준 마련 및 홈페이지·모바일 웹 등 안내, ② 병문안 제한 대상자 선정 및 안내 ③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안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보건복지부, 의료기관평가인증원 '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'('23.6.30.)</p> <p><b>[ 참고자료 ]</b> [붙임 4]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(면회객) 권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업무상 방문객) 가급적 짧은 시간에 방문을 끝낸다.</li> <li>○ (실습 학생·교육관리자·자원봉사 인력 등) 기관별 실습학생 및 자원봉사 인력 등에 대한 관리규정*을 마련하고,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·대응 절차를 교육한다.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→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행동요령, 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등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→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다.</p>	
9	<p><b>2.4. 직원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내 직원은 <b>마스크</b>를 착용한다. 마스크는 환자 접촉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 <u>상황별 개인보호구(예시)</u> (붙임1)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<u>행동요령</u>을 마련하고 <u>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</u>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, 기관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다.</p>	<p><b>2.4. 직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직원은 <b>마스크</b>를 착용한다. 마스크는 환자 접촉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.</li> <li>○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및 의심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 적절한 <u>보호구를 착용한다.</u></li> <li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부 문구 수정</li> <li>- 코로나19 감염증의 4급 전환에 따라 직원 감염관리 안내 사항 정리</li> </ul>
9	<p><b>3.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 중 확진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대응절차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 ▶」을 참고한다.</li> </ul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▶ 참고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 &gt; III. 감염병 환자 신고·보고 체계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이동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<b>마스크</b>를 써우고 이동하며, 직원은</p>	<p><b>삭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진자발생 행정조치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」 14판을 참고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진자 병실 및 기타 접촉한 환경의 표면은 소독하고 환기한다.</li> </ul> <p>○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관리 기준 등 대응절차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▶」을 참고한다.</p> <p>▶ 참고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 &gt; V. 확진자 관리</p>		

## II. 특수 상황(장소)에서의 감염관리

9	<p><b>1. 외래 진료</b></p> <p><b>1.1. 접수 및 대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예약제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.</li> <li>○ 진료 예약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.</li> <li>○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,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.</li> <li>○ 진료 대기 구역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 비치, 안내 포스터 부착 등을 시행한다.</li> </ul> <p><b>1.2. 비밀노출 상황별 관리(치과, 이비인후과, 소아청소년과 등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진은 비밀 노출 정도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다. 환자의 비밀로 오염된(의심되는 경우도 포함) 경우 마스크는 즉시 폐기하고 새것으로 착용한다.</li> </ul> <p><b>1.2.1. 단순 문진, 시진, 상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, 환자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 접촉 전·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li> <li>○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. 진료실 출입 전·후 손 위생을 한다.</li> </ul> <p><b>1.2.2. 비말·분비물 접촉 예상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밀 노출이 가능한 경우 의료진은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와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, 분비물 접촉 상황에 따라 가운, 장갑을 선택하여 추가한다. 장갑 착용 전·후 손위생을 시행한다.</li> <li>○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(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)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. 진료실, 검사실 출입 전 후 손위생을 하도록 한다.</li> </ul> <p><b>1.2.3. 비말이 발생되는 진료(치료)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치과 초음파 스클러나 핸드 피스 사용 등 비말이 발생되는</li> </ul>	<p><b>1. 외래 진료</b></p> <p>삭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 상황에서 감염관리 중 일반 감염관리 내용은 일반적인 감염관리 내용과 코로나19 환자관리 내용을 구분하여 I. 파트와 III. 파트에 정리해서 수록</li> <li>- 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감염관리 내용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개정(삭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비밀노출에 관한 사항은 표준예방관리 지침의 비밀주의 원고사항으로 부록으로 이동</li> <li>*(인공신장설)코로나19 환자관리 파트로 이동</li> </ul> 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진료·처치시,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성 질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보호구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을 착용한다. 보호구는 오염된 경우 교체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호구 탈의 후 손위생을 수행하며, 마스크는 진료영역 밖에서 제거한다(비밀핵이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 있음).</li> <li>○ 환자는 치료 전에 마스크를 벗고, 치료 완료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.</li> <li>○ 진료실에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와 물품만 준비한다. 소독과 멸균이 어려운 표면은 일회용 덮개로 덮거나 진료 후 소독한다.</li> <li>○ 사용한 기구 및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구와 물품은 주변이 오염되지 않게 수거한 후 재처리 과정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한다.</li> <li>○ 환자 진료 후 주변 표면은 소독티슈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한다. 오염된 덮개는 제거한다.</li> <li>○ 환자마다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새것으로 교환하고, 주변 표면 소독을 시행한다. 치과수관은 환자 진료 전·후 물빼기를 시행한다.</li> </ul> <p><b>2. 중환자실</b></p> <p><b>2.1. 개인보호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자 진료 및 처치시 의료진은 환자 접촉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구(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장갑)를 착용한다.</li> <li>○ 기도 삽관, 기관지내시경, 심폐소생술 등의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,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성 질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보호구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한다.</li> </ul> <p><b>2.2. 인공호흡기 관련 처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소모되는 물품들은 가급적 일회용 물품으로 사용한다.</li> <li>○ 인공호흡기 회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분리하지 않는다.</li> <li>○ 가급적 폐쇄된 흡입 시스템(closed suction system)을 사용한다.</li> </ul> <p><b>3. 혈액투석 기관(인공신장실)</b></p> <p>▶ 관련 지침 : 「코로나19 대응지침(인공신장실)」(2023.5.15. 대응지침위원회·대형투석협회) 일부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도록</li> </ul>	<p>2. 중환자실 삭제</p> <p>3. 혈액투석 기관(인공신장실) 삭제</p>	-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교육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한다.</li> <li>○ 가급적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 및 침대 간격 유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대기실에서의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신장실 내 취식을 금한다.</li> <li>○ 예약제를 시행하고 예약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.</li> <li>○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증상자가 인공신장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</li> </ul> </li> <li>○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한다.</li> </ul> <p><b>4. 의료기관 내 공용 장소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용 장소(공용화장실, 공용 샤워실, 배선실 등)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.</li> <li>○ 이용 전 손위생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.</li> <li>○ 의료기관내 공용 장소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한다.</li> <li>○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. 공용 샤워실의 경우는 마스크를 벗을 경우 대화하지 않는다.</li> <li>○ 타병동으로 이동하여 공용 공간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.</li> <li>○ 공용 샤워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유증상자 등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샤워실 사용 후 다음 사람이 사용할 경우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.</li> <li>- 사용 후 접촉한 표면은 소독한다</li> <li>- 충분한 환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항상 문을 열어둔다.</li> <li>- 샤워 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다.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4. 의료기관 내 공용 장소 관리</b></p> <p>삭제</p>	

### III. 감염병환자 신고·보고체계

1	<b>1. 코로나19 환자 격리 권고</b>	<b>1. 코로나19 환자 격리 권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환자 격리 및 병실 이용 내용을 구분</li> <li>-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의 격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환자 격리 시,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(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(코호트 격리))에 격리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환자 격리 시,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(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(코호트 격리))에 격리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</li> </ul> </li> </ul>	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권고한다.</p> <p>○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 대상*에 대한 규정 및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(환기 등) 규정을 마련하며, 입원환자는 이를 준수한다.</p> <p>*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,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▣ 참고자료</b></p> <p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3판 &gt; V. 확진환자 관리 &gt; 1. 확진환자 관리(P.19) 일부 인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임직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</li> <li>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</li> <li>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</li> <li>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. 2022;15(14):871-2.</li> </ul> </li> <li>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팀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</li> <li>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</li> <li>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</li> <li>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</li> <li>- 투석이 필요한 환자</li> <li>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</li> </ul> </li> <li>*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」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</li> </ul> </div>	<p>권고한다.</p> <p>○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 대상*에 대한 규정 및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(환기 등) 규정을 마련하며, 입원환자는 이를 준수한다.</p> <p>*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,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</p> <p>○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추가격리여부를 판단한다.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▣ 참고자료</b></p> <p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 &gt; V. 확진환자 관리 &gt; 1. 확진환자 관리(P.19) 일부 인용</p> <h4>가. 환자 관리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(24시)(6일 차 0시)까지 격리 권고</li> <li>▶ (예시) 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5. 24:00까지 격리 권고</li> </ul> </li> <li>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임직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</li> <li>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</li> <li>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 2022;15(14):871-2.</li> </ul> </li> <li>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팀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</li> <li>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</li> <li>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</li> <li>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</li> <li>- 투석이 필요한 환자</li> <li>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</li> </ul> </li> <li>*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」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</li> </ul> </div>	<p>리 권고내용 명기</p> <p>* 입원 환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격리 권고임을 명시</p>
13	<p><b>2. 병실</b></p> <p>○ 코로나19 환자 격리 시,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에 배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격리실 사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(환기율, 재순환 방지 등)을 갖추고 병실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.</li> </ul>	<p><b>2. 병실</b></p> <p>○ 코로나19 입원환자 격리 시,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(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(코호트 격리))에 격리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격리실 사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(환기율, 재순환 방지 등)을</li> </ul>	<p>- 코로나19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: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</p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*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, 가능하다면 100% 전배기 가동하고 안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 한다.</p> <p>…중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한다.</li> <li>○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(또는 보건용) 마스크를 씌우고,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시 가운, 장갑 등을 착용시킨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가 이동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킨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환자가 코로나19 격리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이후에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고 표준주의를 적용한다.</li> <li>○ 병동 내 일반환자, 확진환자가 혼재하는 경우 격리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</li> </ul>	<p>갖추고 병실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.</p> <p>*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, 가능하다면 100% 전배기 가동하고 안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 대상*에 대한 규정 및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(환기 등) 규정을 마련하며, 입원환자는 이를 준수한다.</li> </ul> <p>*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,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</p> <p>…중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격리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한다.</li> <li>○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(또는 보건용) 마스크를 씌우고,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시 가운, 장갑 등을 착용시킨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가 이동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킨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환자가 코로나19 격리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이후에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고 표준주의를 적용한다.</li> <li>○ 병동 내 일반환자, 확진환자가 혼재하는 경우 격리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</li> </ul>	<p>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</p> <p>- 코로나19 환자 개인보호구 및 표준주의 내용은 부록으로 이동</p>
14	<p>3. 개인보호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자를 접촉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의 올바른 사용과 착탈의 방법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사전에 받는다.</li> </ul> <p>…중략…</p>	<p>3. 개인보호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자를 접촉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의 올바른 사용과 착탈의 방법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사전에 받는다.</li> </ul> <p>…중략…</p>	<p>-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</p>
14	<p>4.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 관리</p> <p>…중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음압격리실에서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(환기율, 재순환 방지 등)을 갖추고 일반격리실을 사용한다.</li> </ul> <p>*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, 가능하다면 100% 전배기 가동하고 안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,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필요시 모자 추가)를 착용한다.</li> </ul>	<p>4. 에어로졸 발생 시술시 관리</p> <p>…중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음압격리실에서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요건(환기율, 재순환 방지 등)을 갖추고 일반격리실을 사용한다.</li> </ul> <p>*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 병실을 권장하며, 가능하다면 100% 전배기 가동하고 안될 경우 해당 격리실의 공조를 차단하여 재순환을 방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,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필요시 모자 추가) 착용을 권고한다.</li> </ul>	-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* 필요시 PAPR (Powered Air-Purifying Respirators;PAPRs) 사용 가능 ...중략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 후에는 에어로졸이 충분히 <u>되도록</u> 환기(<u>시간당 12회</u>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) 후 소독을 한다.</li> </ul>	<p>* 필요시 PAPR (Powered Air-Purifying Respirators;PAPRs) 사용 가능 ...중략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어로졸 발생 시술 후에는 에어로졸이 충분히 <u>제거되도록</u> 환기(<u>예. 시간당 12회</u>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) 후 소독을 한다.</li> </ul>	
15	<p><b>5. 외래 진료, 수술, 투석, 분만시 관리</b></p> <p><b>5.1.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환자는 <u>일반</u>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며, 동일한 진료실을 사용할 경우, 코로나19 환자 진료 후 <u>소독 시행 및 환기한다</u>.</li> <li>○ 진료 참여 인력은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비말이 발생하거나 분비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추가하고, 접촉 상황에 따라 가운과 장갑 등을 선택한다.</li> <li>○ 에어로졸 생성 처치(예: 핸드피스, 쓰리웨이 실린지,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)를 사용하는 경우, 개별 진료실에서 수행하며, 개인보호구 착용 후 적절한 환기(기계환기 또는 자연환기)와 소독을 시행한다.</li> <li><b>[참고자료]</b> [붙임 4] 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</li> <li>○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, 별도구역에 대기하고,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.</li> </ul>	<p><b>5. 외래 진료, 투석</b></p> <p><b>5.1.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환자는 <u>가능한 일반</u>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며, 동일한 진료실을 사용할 경우, 코로나19 환자 진료 후 <u>소독 및 환기</u>를 <u>시행한다</u>.</li> <li>○ 진료 참여 인력은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비말이 발생하거나 분비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추가하고, 접촉 상황에 따라 가운과 장갑 등을 선택한다.</li> <li>○ 에어로졸 생성 처치(예: 핸드피스, 쓰리웨이 실린지,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)를 사용하는 경우, 개별 진료실에서 수행하며, 개인보호구 착용 후 적절한 환기(기계환기 또는 자연환기)와 소독을 <u>시행한다</u>.</li> <li>○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, 별도구역에 대기하고,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구 구체화</li> </ul>
15	<p><b>5.2. 코로나19 환자 수술 시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확진 환자 또는 의사 환자는 호흡기 질환의 중증도 및 감염전파 위험 등을 고려해 음압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진행한다. * 전신마취 수술 및 호흡기계가 포함되는 수술은 가능한 음압수술실을 권고한다.</li> <li>○ 음압수술실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환기와 소독 여건이 확보된 일반 수술실에서 수술이 가능하며, 수술일정 조정이 가능하면 마지막 순서로 배정하고 수술 전·후 조치 등을 이행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.</li> <li>○ 수술실에서 필요하지 물품은 가능한 이동하여 제거한다. 불가능할 경우 오염 예방 또는 수술 후 소독 방안을 마련한다.</li> <li>○ 수술실 문에 코로나19 격리 표식을 하고 의료진의 접근을</li> </ul>	<p><b>5.2. 코로나19 환자 수술 시 관리</b></p> <p>삭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환자실, 수술실, 분만실 등에 대한 의료기관 내 호흡기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제한한다. 환자 입실 후 자동문을 수동 상태로 전환하여 닫아둔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수술실 밖에 대기 중인 사람에게 요청하고 밖에서 문을 열고 전달해준다.</li> <li>○ 개인보호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착용하고 입실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보호구, 의료폐기물함 등을 수술방 앞 전실(없는 경우 파티션 등으로 공간구획)에 마련</li> <li>- 수술 참여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5종(멸균긴팔가운, 멸균장갑,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헤어캡)을 착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필요시 PAPR 등 고효율호흡기 보호구 사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술 후 개인보호구 탈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관별 전실 또는 별도의 탈의장소 구비여부에 따라 탈의절차를 마련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술 후 환자는 회복실로 이동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완전히 깨운 후 퇴실한다.</li> <li>○ 수술기구는 가능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사용해야 하는 기구는 반드시 소독과 멸균 과정을 통해 재처리해야 하며, 사용한 기구로 인해 수술실 주변 환경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·이동 절차를 마련한다.</li> <li>- 기구를 세척하는 직원은 환자 분류에 따라 대상 의료진과 동일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		
16	<p><b>5.3. 코로나19 환자 혈액투석</b></p> <p>▶ 관련 지침 : 「코로나19 대응지침(인공신장실용)」(2023.5.15. 대한신장학회/대한투석협회) 일부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진환자의 경우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 또는 격리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. 그러나, 의료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입원 우선대상으로 고려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…중략…</li> </ul> </li> <li>○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환기가</li> </ul>	<p><b>5.2. 코로나19 환자 혈액투석</b></p> <p>▶ 관련 지침 : 「코로나19 대응지침(3-1판, 인공신장실용)」(2023.6.15. 대한신장학회/대한투석협회) ※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진환자의 경우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 또는 격리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.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환기가 유지되는 경우 기준 투석시행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.</li> <li>○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입원 우선대상으로 고려하며,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할 수 있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…중략…</li> </ul> </li> <li>○ 의료진은 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</li> </ul>	- 최신 지침 반영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유지되는 경우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에서(코호트 격리 투석)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○ 진료, 시술 및 활동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 ...중략...</p>	<p>KF94 또는 N95 마스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착용한다. ...중략...</p>	
17	<p><b>5.4. 코로나19 환자 분만시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분만은 음압분만실 또는 일반 1인 분만실에서 분만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분만실에서 분만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적정한 환기(공조 재순환 방지, 환기 최대화)를 유지하고, 의료인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, 분만 후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분만동안 분만실의 문은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참여하는 의료인력은 개인보호구 4종(KF94 동급 이상의 고효율호흡기보호구 권장)을 착용한다.</li> <li>○ 분만실 내 산모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에 신생아용 위머를 준비하고 가능한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한다.</li> <li>○ 코로나19 확진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조기퇴원이 가능하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진 산모의 출생 신생아는 퇴원 전까지 분리된 공간에서 돌본다.</li> <li>- 신생아에게 에어로졸 발생 시술이 필요한 경우 음압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사용을 권고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5.4. 코로나19 환자 분만시 관리</b></p> <p>삭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환자실, 수술실, 분만실 등에 대한 의료기관 내 호흡기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</li> </ul>
17	<p><b>6. 의료기구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능한 일회용 기구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다.</li> <li>○ 재사용 기구는 사용 후 올바른 방법으로 재처리▶를 시행한다.</li> </ul>	<p><b>6. 의료기구 관리</b></p> <p>삭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병원 환경 관리 및 감염예방관리와 동일,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재사용 기구의 재처리 방법 &gt;</b></p> <p><b>1) 세척</b></p> <p>① 혈액이나 체액, 분비물, 배설물에 오염된 기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 장소로 이동시킨다.</p> <p>②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기구를 충분히 잡기게 한 후 세척 용액이 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 한다.</p> <p>③ 혈액이나 체액, 분비물, 배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 한다.</p> <p>④ 코로나19에 노출된 기구 세척 시, 세척 직원은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, 긴팔 방수기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모자,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등을 추가한다.</p> <p><b>2) 소독(멸균)</b></p> <p>① 기구 위험도에 따라 비위험기구는 낮은 수준 소독, 중위험기구는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, 고위험기구는 멸균을 적용한다. 기구 수준별 소독제 및 멸균 방법은 별첨을 참고한다.</p> <p>② 소독제 제조사의 권장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소독제 희석 및 적용 시간, 소독제 유효기간 및 유효농도 측정 등 권장 소독과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</p>		
18	<p><b>7. 청소와 소독 · 환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소나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○ 환경 청소 및 소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, 보건용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 등을 착용하고,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방수성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을 추가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청소 · 소독 시작 전, 중,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,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한다.</li> <li>○ 병원균의 분무 발생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한다.</li> <li>○ 걸레(천 또는 일회용 포 등)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* 이상 유지 후, 물로 적신 천(헝겊 등)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소독제 종류에 따라 소독액 접촉시간 권고에 따름</li> </ul> </li> <li>○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한다. 단, 청소 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,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 시켜 보관한다.</li> <li>○ (소독의 시점)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하며,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환자 주변 표면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소독한다.</li> <li>○ (퇴실 후 병실 소독 · 환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물재질(침구류 커버, 커튼 등)은 교체한다.</li> <li>- 오염이 눈에 보이면 일회용 타올(wipe) 등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세제를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7. 청소와 소독 · 환기</b></p> <p>삭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병원 환경 관리 및 감염예방관리와 동일,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
	<p>사용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면에 구멍이 없고 매끈한 경우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(1,000ppm)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결레 등으로 철저히 닦는다.</li> <li>-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구멍이나 닦기 어려운 내부 구조가 있는 경우 소독액에 침적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한다.</li> <li>- 소독이 끝나면 최소 1시간 이상 환기(시간당 6회 환기 기준)를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올로 표면을 닦아낸다.</li> <li>- 점검목록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소독과 환기가 되었는지 점검한다.</li> </ul> <p>○ (환경 소독제)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·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·사용 방법·주의사항을 준수한다.</p> <p>▶ 참고 : (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) 환경부 초록누리 <a href="http://ecolife.me.go.kr">http://ecolife.me.go.kr</a></p> <p>[일상 소독 및 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 관리 참고사항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>사업장</th><th>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</th><th>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독 계획</td><td>소독 범위 계획수립</td><td>환자 접촉 범위를 파악하여 소독 범위 계획수립</td></tr> <tr> <td>소독 교육</td><td>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</td><td></td></tr> <tr> <td>개인 보호구</td><td>방수성 정갑, 보건용 마스크 * 청소방법과 범위에 따라 추가</td><td>*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, 방수성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 착용</td></tr> <tr> <td>소독제</td><td>· (소독제 선택)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(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) - 차아염소산나트륨(원액 5%) 1,000ppm 희석액(1분간), 부식되는 표면, 국소 범위인 경우 알코올(70% 에탄올) 사용 가능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자주 사용하는 표면</td><td>· (기본 원칙) 비누와 물로 세척(특히, 더러워진 곳) 등 청소를 한 뒤 소독실시 · (일상 표면) 손잡이, 팔걸이, 책상, 의자, 전화기, 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, 엘리베이터 버튼 등 · (화장실 표면) 수도꼭지, 문고리, 변기 덮개, 욕조 등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소독 이후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 사항과 해당 장소의 환기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(1,000ppm이상)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</li> </ul>	사업장	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	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	소독 계획	소독 범위 계획수립	환자 접촉 범위를 파악하여 소독 범위 계획수립	소독 교육	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		개인 보호구	방수성 정갑, 보건용 마스크 * 청소방법과 범위에 따라 추가	*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, 방수성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 착용	소독제	· (소독제 선택)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(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) - 차아염소산나트륨(원액 5%) 1,000ppm 희석액(1분간), 부식되는 표면, 국소 범위인 경우 알코올(70% 에탄올) 사용 가능		자주 사용하는 표면	· (기본 원칙) 비누와 물로 세척(특히, 더러워진 곳) 등 청소를 한 뒤 소독실시 · (일상 표면) 손잡이, 팔걸이, 책상, 의자, 전화기, 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, 엘리베이터 버튼 등 · (화장실 표면) 수도꼭지, 문고리, 변기 덮개, 욕조 등		
사업장	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	코로나19 환자 장소 소독																		
소독 계획	소독 범위 계획수립	환자 접촉 범위를 파악하여 소독 범위 계획수립																		
소독 교육	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																			
개인 보호구	방수성 정갑, 보건용 마스크 * 청소방법과 범위에 따라 추가	*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, 방수성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 착용																		
소독제	· (소독제 선택)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(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) - 차아염소산나트륨(원액 5%) 1,000ppm 희석액(1분간), 부식되는 표면, 국소 범위인 경우 알코올(70% 에탄올) 사용 가능																			
자주 사용하는 표면	· (기본 원칙) 비누와 물로 세척(특히, 더러워진 곳) 등 청소를 한 뒤 소독실시 · (일상 표면) 손잡이, 팔걸이, 책상, 의자, 전화기, 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, 엘리베이터 버튼 등 · (화장실 표면) 수도꼭지, 문고리, 변기 덮개, 욕조 등																			
19	<h3>8.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</h3> <h4>8.1. 기본 원칙</h4>	<h3>8.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</h3> <h4>삭제</h4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병원 환경 관리 및 감염예방관리와 동일, 감염병 등급 조</li> </ul>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탁물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○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, 개인보호구 제거 후 손위생을 수행한다.</li> <li>○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(「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」, 「폐기물관리법」).</li> <li>○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을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폐기한다. 단, 체액이나 배설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</li> </ul> <p><b>8.2. 의료폐기물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격리의료폐기물의 관리규정에 따른다.</li> </ul> <p><b>8.3. 세탁물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침대 시트, 베개 덮개,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을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침대 시트, 베개 덮개, 담요,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을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</li> <li>-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</li> <li>-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오염세탁물로 처리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		정에 따른 삭제
20	<p><b>9. 코로나19 사망자 관리</b></p> <p><b>9.1. 임종 단계</b></p> <p>…증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종 면회를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와의 접촉 범위에 따라 보호구 종류를 결정한다. 접촉없이 거리두기를 하며 참관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(필요시 장갑)하며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.</li> <li>- 유족 중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, 면회를 위한 이동 동선과 보호구 착용 등 규정을 마련한다.</li> </ul> </li> <p><b>9.2. 시신과 접촉시 감염예방</b></p> <p>…증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신의 사후처치 등 시신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 <u>다음의 감염예방·관리 조치를 적용한다.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촉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</li> <li>- 시신 접촉 중 유족 등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유지(1.5미터 이상 권장)</li> </ul> </li> </ul> </ul>	<p><b>6. 코로나19 사망자 관리</b></p> <p><b>6.1. 임종 단계</b></p> <p>…증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종 면회를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와의 접촉 범위에 따라 보호구 종류를 결정한다. 접촉없이 거리두기를 하며 참관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(필요시 장갑)하며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.</li> <li>- 유족 중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, 면회를 위한 이동 동선과 보호구 착용 등 규정을 마련한다.</li> </ul> </li> <p><b>6.2. 시신과 접촉 시 감염예방</b></p> <p>…증략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신의 사후처치 등 시신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 <u>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예방·관리 조치를 적용한다.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신 이송 시 &lt;붙임1. 코로나19 개인보호구의 사용&gt;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</li> </ul> </li> </ul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우측) 코로나19 환자 임종 면회 및 시신 접촉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사항에 따르도록 문구 정리</li> <li>- 시신 운구 등의 종사자 감염관리 일반 내용은 유지함</li> </ul>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	<p>- 시신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시신의 호흡기 비말이 배출되지 않도록 천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덮음(천이나 마스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)</p> <p>…중략…</p> <p>○ 시신을 이동하기 전 린넨천으로 감싸거나 시신백에 수습</p> <p>〈시신백 사용 권고 상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신의 체액 누출이 많거나, 부검 후, 장례 전 일정기간 시신을 보관해야 할 경우,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시신의 관리(수습, 이동 등)에 관여하는 경우 등</li> </ul> <p>〈사신백 사용시 고려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특별상황(다량의 체액 누출 또는 장거리 이송 등)에는 이중 사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,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경우 흡습포 추가</li> <li>▶ 사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* U자형 자파식은 중앙 자파식보다 사신백의 접촉이 적음</li> </ul> <p>- 시신백에 시신 수습 시 곁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</p> <p>〈사신백 곁면 오염 주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신백의 곁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, 사신백의 곁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</li> <li>▶ 사신백의 자파를 닫은 후 곁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을 것</li> <li>▶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을 것</li> </ul> <p>- 린넨천으로 시신을 감싼 경우 분비물 등으로 젖은 부위가 없는지 재확인</p> <p>- 시신 이송 시 &lt;붙임1. 코로나19 개인보호구의 사용&gt;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</p> <p><b>9.3. 환경 소독</b> …중략…</p>	<p>…중략…</p> <p>○ 시신을 이동하기 전 린넨천으로 감싸거나 시신백에 수습</p> <p>〈사신백 사용 권고 상황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신의 체액 누출이 많거나, 부검 후, 장례 전 일정기간 시신을 보관해야 할 경우,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시신의 관리(수습, 이동 등)에 관여하는 경우 등</li> </ul> <p>〈사신백 사용시 고려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특별상황(다량의 체액 누출 또는 장거리 이송 등)에는 이중 사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,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경우 흡습포 추가</li> <li>▶ 사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* U자형 자파식은 중앙 자파식보다 사신백의 접촉이 적음</li> </ul> <p>- 시신백에 시신 수습 시 곁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</p> <p>〈사신백 곁면 오염 주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신백의 곁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, 사신백의 곁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</li> <li>▶ 사신백의 자파를 닫은 후 곁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을 것</li> <li>▶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을 것</li> </ul> <p>—린넨천으로 시신을 감싼 경우 분비물 등으로 젖은 부위가 없는지 재확인</p> <p>—사신 이송 시 &lt;붙임1. 코로나19 개인보호구의 사용&gt;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</p> <p><b>6.3. 환경 소독</b> …중략…</p>	

## 부록

-	비말주의	신설	-코로나19 감염은 호흡기 감염으로 표준주의와 비말주의를 동시에 적용함
-	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(면회객) 권고사항	신설	-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면회객 권고사항 안내

쪽	현행(2-2판)	개정(2-3판)	개정사유
30	멸균 및 소독 방법	삭제	-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
31	환기횟수와 환기율 및 비말핵 농도의 감소	삭제	-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